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0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9. 5. 1

다. 상정·의결일자 : 2009. 5. 13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종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직종별·기관별 정원 조정

·총 계 일반직 : 508명 → 507명 (감 1명)

·총 계 기능직 : 84명 → 83명 (감 1명)

·본 청 일반직 : 230명 → 228명 (감 2명)

·본 청 연구직 : 2명 (증 2명-신설)

·읍·면 일반직 : 164명 → 165명 (증 1명)

·읍·면 기능직 : 13명 → 12명 (감 1명)

- 계급별 정원 조정

·일반직 6급 : 141명 → 144명 (증 3명)

·일반직 7급 : 159명 → 162명 (증 3명)

·일반직 8급 : 119명 → 126명 (증 7명)

·일반직 9급 : 51명 → 37명 (감 14명)

·기능직 6급 : 3명 → 7명 (증 4명)

·기능직 7급 : 8명 → 18명 (증 10명)

·기능직 10급 : 32명 → 17명 (감 15명)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 - 285호(2009.3.23 ~ 2009.4.12)
- 의견제출 사항 : 2건(별첨참조)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다. 예산 : [별첨] 소요비용 추계서 참고

라. 합의 : 관련부서 합의됨.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직종·직급별 정원기준을 정하고 6급이하 직원은 직급별 정원 총수만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행정능률을 기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 문 : 대통령령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6급이하 직원은 정원 총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는지요?
- 답 : 6급이하 직원의 정원총수는 시장 군수가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문 : 별정·정무직이 상향 조정되는 사유?
- 답 : 3%로 조정한 것은 현원에 가깝도록 하였습니다.
- 문 : 일반직 1명, 기능직1명 총2명 감원하여 연구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연구직은 어디서 근무할 것인지요?
- 답 : 유물전시관 1, 문서기록원 1 총2명입니다.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09. 5.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